

이천시사무의읍.면.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0. 30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0월 10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0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(96.10.23) 내무위원회 상정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

-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,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,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읍.면.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,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,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가 읍.면.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천시사무의 읍.면.동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,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,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읍.면.동에 위임(안 제2조)
- 읍.면.동 건축물대장 사후관리 및 부분개정 개별공시지가 조사.산정 폐지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,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,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호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.면.동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,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가 읍.면.동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